

##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
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8월 일

국 방 부 장 관

1. 사업의 명칭 :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
2. 사업의 개요 :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
3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
  - 위 치 :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-42
  - 면 적 : 30m<sup>2</sup>
4. 사업의 시행기간 : 2015. 8. 11. ~ 2015. 12. 31.
5.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
  - 명 칭 : 국방시설본부장
  - 주 소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
  - 연 락 처 : 02)748-4783

6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(細目)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 <sup>2</sup> )	편입 면적 (m <sup>2</sup> )	실제 이용 상황	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	소유자		관계인	
			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계				30	30						
1	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	322-42	대지	30	30	담장 및 유류 배관	계획관리 지역	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-27	강동자		

※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(☎02-748-424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의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(안)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(☎ 02-748-5641~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